

금천구 자치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제안이유

우리구 10개동 자치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금천형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추진과 안정적 자치회관 운영을 위하여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보고함.

2. 주요내용

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23. 10. 기준

동 명	자치회관 주소	프로그램		체력단련실		비고
		개수	수강인원	운영여부	이용인원	
계		104	2,238	7	1,616	
가산동	가산로 129	10	162	X	-	
독산1동	시흥대로 123길 11	9	206	X	-	
독산2동	독산로 179	1	246	O	266	
독산3동	독산로 317	10	243	O	241	
독산4동	독산로 232	11	278	O	237	
시흥1동	시흥대로 58길 36	7	160	O	181	
시흥2동	금하로 764	8	213	O	220	
시흥3동	시흥대로 18길 40	11	220	X	-	
시흥4동	독산로 36길 14	11	242	O	238	
시흥5동	금하로 24길 6	14	268	O	233	

나. 위탁현황

-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3. 12. 31.(1년) ※ 최초위탁
- 2) 수탁기관 : 각 동 주민자치회(10개동)
- 3) 운영인력 : 2명(사무국장, 사무주임)
- 4) 위탁사무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 시설 관리 제외)
 - 가) 주민자치회 사무원 동별 채용 및 관리
 - 나) 프로그램 운영관리(신규, 폐강, 변경 등) 및 수강료 징수·집행 등
 - 다)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도농교류 사업추진 등
- 5) 위탁금액 : 1,137,050천원

(단위 : 천원 / 23. 10. 기준)

동	총 계	인건비	운영비	의제개발비	비고
총 계	994,634	648,450	226,184	120,000	
가산동	111,222	62,995	36,227	12,000	※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12월 지급예 정
독산1동	89,984	64,286	13,698	12,000	
독산2동	104,131	64,780	27,351	12,000	
독산3동	107,756	66,085	29,671	12,000	
독산4동	98,339	63,556	22,783	12,000	
시흥1동	90,633	63,949	14,684	12,000	
시흥2동	92,716	64,109	16,607	12,000	
시흥3동	94,985	62,962	20,023	12,000	
시흥4동	107,849	64,789	31,060	12,000	
시흥5동	97,019	70,939	14,080	12,000	

다. 재계약 내용

-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 2) 수탁기관 : 각 동 주민자치회(10개동)
- 3) 운영인력 : 2명(사무국장, 사무주임)
- 4) 위탁사무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 시설 관리 제외)
 - 가) 주민자치회 사무원 동별 채용 및 관리
 - 나) 프로그램 운영관리(신규, 폐강, 변경 등) 및 수강료 징수·집행 등
 - 다) 강사 및 수강생 관리, 도농교류 사업추진 등
- 5) 주요 변경내용

구 분	기 준	변 경
위탁기간	2023.1.1. ~ 2023.12.31.[1년간]	2024.1.1. ~ 2025.12.31.[2년간]
인 력	2명(사무국장, 사무원)	좌 동
위탁사무	각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시설관리 제외)	좌 동
수탁기관	각 동 주민자치회(10개동)	좌 동
공 간	각 동 자치회관	좌 동
예 산	1,137,050천원	1,248,840천원(미정)

3. 재계약 사유

가. 재계약 추진 필요성

- 1) 주민자치회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탁 운영함으로써 자치회관 사무 전담인력(사무국 2명, 동행정 1명, 자체인력 2명 등) 배치로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개선, 민원사항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짐

- 2) 정기적인 자치회관 분과위원회 논의를 통하여 신규 프로그램 발굴, 민간 네트워크 활용 등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상황이 개선됨
- 3) 자치회관 수탁 운영을 통하여 ‘금천형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감 제고에 기여함
- 4) 기존 수탁단체가 연속적으로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안정성 제고

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적정(평균 88.2점)

1) 성과평가 개요

- 추진근거 :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평가)
- 평가기간 : 23. 9. 20. ~ 9. 30.
- 평가대상 : 10개동 주민자치회
- 평가내용 :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항목
 - ▶ 공통분야 : 사업운영비전, 재정운영효율성, 조직운영효율성, 사회적가치, 주민만족도
 - ▶ 개별분야 : 사업목표달성, 프로그램운영, 환경관리, 개선노력 등
- 평가방법 :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2) 평가결과

구분	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기준	100점 ~ 90점	89점 ~ 80점	79점 ~ 75점	75점 미만
대상	가산동(97) 시흥2동(95) 시흥5동(94) 시흥3동(90)	독산2동(87) 시흥1동(87) 독산4동(86) 시흥4동(85) 독산3동(84)	독산1동(77)	-

4. 관계법령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7조(운영)

-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 ③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되, 제4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